

부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4066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2. B

3. C

4. 신화철강 주식회사

5. D

6. 주식회사 한진철강

7.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

변론 종결 2016. 3. 24.

판결 선고 2016. 4. 21.

주 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58,348원 및 그 중 244,807,852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한진철강,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한진철강,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58,348원 및 그 중 244,807,852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한진철강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주식회사 한진철강은 E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3. 12. 3. 접수 제283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3. 10. 7. 접수 제23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C과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 11. 5. 접수 제704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는 E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3. 10. 22. 접수 제219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3. 11. 5. 접수 제228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7.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2013.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29,069,522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9.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 그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이율은 2014. 4. 1. 이후 연 12%이다.

- 보증번호 : G
- 보증일자 : 2009. 3. 19.
- 보증기한 : 2010. 3. 18.(이후 2014. 3. 14.까지 기한연장됨)
- 보증금액 : 285,000,000원
- 대출과목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나. 원고는 경남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는 2009. 3. 19. 경남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A, B, C은 같은 날인 2009. 3. 19. 원고에게 E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E의 사업부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4. 1. 경남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244,807,8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E는 보증기한 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위약금 181,080원을 부담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5,369,416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합계

250,358,348원(=244,807,852원+181,080원+5,369,41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44,807,852원에 대하여 그 변제일인 2014. 4. 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15. 2.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위 244,807,852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조 제2항은 위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연 20%)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연 15%)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136,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한진철강,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한진철강,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가 E 또는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와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위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06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E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무렵 그 담보를 위하여 2009. 12. 28. 경남은행과 사이에 그 소유인 경남 함안군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12. 28. 접수 제29595호로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경남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011. 6. 29.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하여 2011. 6. 30. 다른 담보물을 이에 추가하거나 일부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1. 경남은행에 위 대출금채무 244,807,852원을 변제하고, 같은 등기소 2014. 7. 15. 접수 제14892호로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 의창구청장, 진해구청장, 경남 함안군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경남은행의 회신결과만으로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경남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하여 E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원고가 경남은행에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음으로써 원고 또한 구상금채권에 관한 물적 담보를 얻게 되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장래에 취득할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확보된 우선변제권의 범위 밖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원고는 2014. 10. 30. E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에게 일부 이전된 이 사건 근저당권만으로는 구상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신화철강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한진철강,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균철

판사강주혜

판사최승훈

별지